

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1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23. 4. .

제 출 자 : 평 창 군 수

1. 제안이유

교육체육과가 인재육성과와 올림픽체육과로 조직개편됨에 따라 교육경비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체육지원업무 소관 부서장을 추가하여 학교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평창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 등 변경(안 제7조1항)

○ 심의위원회 위원수 변경: 12명 이내 → 13명 이내

나. 평창군 교육경비심의위원회 구성 등 변경(안 제7조1항2호)

○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추가: 체육지원업무 소관 부서장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붙임(관계법령 발췌)

나. 예산조치: 별도조치 필요 없음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)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3. 2. 1. ~ 2023. 2. 2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2) 규제심사 :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: 원안동의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: 해당없음
- 5) 자치법규 개인정보 사전검토 : 해당없음

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12명”을 “13명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“소관 부서장이”를 “소관 부서장, 체육지원업무 소관 부서장이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<u>12명</u>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그 밖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, 문화업무 소관 부서장, 교육지원업무 <u>소관 부서장</u>이 되며,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,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.</p> <p> 가. ~ 다. (생 략)</p> <p>② · ③ (생 략)</p>	<p>제7조(위원회의 구성 등) ① -----</p> <p>----- <u>13명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 <u>소관 부서장</u>, <u>체육지원업무 소관 부서장</u>의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 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· ③ 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해당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 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행정지원국 인재육성과 인재육성과장 여정은
연락처	(033) 330 - 2020